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·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20-183 관련
----------	--------------

발의년월일: 2020. 12.  
발 의 자: 채우진 외 1명

## 1. 수정이유

주민자치회 설치에 관하여 “공덕동, 용강동, 서강동, 서교동, 성산2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”를 “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”로 개정한 제3조제1항의 규정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부칙 안 제1조에 주민자치회 설치에 관한 개정규정의 시행을 2022년 1월 1일부터로 함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
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부칙 제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제1항의 개정  
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주민자치위원회 해산 등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 
설치된 동의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 
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주민자치회는 주  
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신설>	부칙 제1조(시행일) ----- -----. <u> 다만,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u>